

# 정 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협회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에 의하여 설립하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협회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이용촉진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2.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3. 소프트웨어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대가의 기준연구 및 노임단가의 조사
6. 소프트웨어 유통촉진과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공동이익 및 협력을 위한 회원진흥사업
8. 회원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사업
9.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해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관련 사업
11.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 추천사업
12. 예산편성 및 시행에 관련된 시장조사, 원가계산, 원가검토, 민간 위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13.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쟁조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14. 소프트웨어 기술자력에 관한 사항
1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임사업 및 학술연구용역
16. 기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과 협회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통상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정회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영위하려고 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갖는 자로 한다.
- ③ 특별회원은 소프트웨어산업발전에 관련되는 정보통신관련업체, 연구단체, 기타 단체로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갖는 자로 한다.
- ④ 통상회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영위하려고 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의결권을 갖지 않고 별도 규정에서 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 자로 한다.
- ⑤ 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조(가입)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정관 및 규정 준수의 의무
-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
- 3. 회비 납부의 의무

제 8조(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이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납된 회비는 납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된 회비 중 선납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할 수 있다.

- ②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 2. 6개월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3.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 3 장 임 원

제 9조(임원)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인
  2. 부회장 : 20 인 이내
  3. 이 사 : 53 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 2 인
- ② 비상근직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상근직임원은 비회원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 ③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회장 1인, 이사 1인은 총회의 결의로서 상근직을 선임하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1부
  2. 이력서(사진첨부) 1부
  3.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제10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운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운영상의 제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4. 감사는 협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상근부회장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자가 차기 총회(임시총회 포함)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임원의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기 중으로 본다.

제1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협회의 임원은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밀을 누설하거나 타 회원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임원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임원자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보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고문) ① 본 협회는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본 협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 4 장 회 의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재적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할 때

제16조(총회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업무계획 및 업무실적 보고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해산, 합병, 분할
6.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

제17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하며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8조(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회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2.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변경
6.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정족수 및 의결) ①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회의 합병 및 해산

③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제20조(위원회) ① 본회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 및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정한다.

제21조(의사록)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은 회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 후 이를 협회에 보관한다.

## 제 5 장 회 계 및 재 산

제22조(수입금) 본 협회의 수입금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23조(회비의 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재산)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정한 재산
2. 매 사업년도 결산 상 잉여금 중 적립금
3. 기타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 제 6 장 사 무 국 등

제26조(사무국) ① 본 협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소정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선임한다.

③ 사무국의 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

## 제 7 장 보 칙

제27조(승인 및 보고) ①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정관의 변경
2. 협회의 합병 및 해산
3. 상근임직원의 정수
4. 정부보조금의 사용

② 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4.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제28조(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분) 협회가 해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1988년 6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9년 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1년 2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4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년 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6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7년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8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년 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3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5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6년 3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3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4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정관 시행일 이전의 준회원은 이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정회원으로 본다.

(2007.3.13. 개정)